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이용·개발 시 온실가스 등의 영향 평가〉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873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양이용·개발 시 온실가스 등의 영향 평가	3

I. 제안경위

2024년 8월 16일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라 함)하고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의 실현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해당 계획 및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과 그로 인한 영향, 온실가스의 감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 이용·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제6조제3항제4호·제7조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해양이용·개발 시 온실가스 등의 영향 평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이용·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제6조제3항제4호·제7조제5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조(기본원칙)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2. (생략) <u><신설></u>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조(기본원칙) ----- ----- -----. 1.·2. (현행과 같음) 3. <u>해양이용·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u>

3. ~ 5. (생략)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①·② (생략) ③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④ (생략) 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해양이용·개발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적정성</u> 5.·6. (현행 제4호 및 제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6. (현행 제5호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하여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해양이용·개발 관련 처분 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있음.

[표]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개요

구분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근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목적	개발 행위의 ‘해양환경’ 영향 + 이용 적정성 검토	
평가 대상	해양공간 전역(영해~EEZ 등)의 개발 행위 (공유수면 점사용, 준설, 광물·광채취 등)	
평가 항목	해양이용협의(9개 항목)	해양이용영향평가(13개 항목)
	공간이용, 사회경제, 해양물리, 해양수질·퇴적물, 해양지형,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유영생태계, 위해요인	협의 평가항목 9개 + 대기질·기상, 경관·빛, 소음·진동, 전자기장

-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 동향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집행 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¹⁾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세부평가항목으로 온실가스를 규정²⁾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바, 기후 위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여짐.

- 이에 개정안은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제4조)에 해양이용·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 ② 평가 분야 및 항목(제6조)에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는 해양이용·개발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 ③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제7조)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6. (생략)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2. 환경영향평가

나. 대기환경 분야

4) 온실가스

다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해양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양이용·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온실가스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해양이용·개발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7조에 따르면³⁾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바다골재채취사업자,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자 등)로 하여금 해양환경 보전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해양환경기준, 해양생태도, 해양배출 처리 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의 기준은 그 수치나 등급이 매우 구체적⁴⁾ 이므로 적용이 용이한 점이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 감축)는 그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4) 예를 들어, 해양환경보전 목표 설정 시 고려하는 해양환경기준의 경우 구체적 수치를 규정하고 있음

1. 해수수질
- 1) 생활환경 기준

항목	수소이온농도 (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용매추출유분 (mg/L)
기준	6.5-8.5	1,000 이하	0.01 이하

2~3. (생략)

기준이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이므로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집행상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감축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이용·개발 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